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 - 목 차 -

### I.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 1p

- 한동대학교, 길원평 교수
-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조영길 변호사

### II.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통과 사례 ..... 5p

- Christian Colleague, Charles H. McVety 총장
- CA 주의회, 미국 초등학교, 각 종 외국 사례
- Christian Concern, Andrea Williams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용준 변호사

### III. 목회자가 바라본 포괄적 차별금지법 ..... 9p

- 목회자들이 바라본 포괄적 차별금지법

김양재, 유기성, 이찬수, 박한수, 이재훈, 오정현, 김병삼, 최병락, 차성진,  
Adrian Rogers, 브라이언 박, 정대운, Paul Yoon

- 지식인들이 바라본 포괄적 차별금지법

Jordan B. Peterson, 김용준

### IV. 결 론 ..... 14p

## < 1.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

### 『조국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 한동대학교, 길원평 석좌교수

#### 1. 서론

#####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대한민국에는 이미 성별, 장애, 연령, 고용 형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개별적 차별 금지법 스무 개 이상이 있다. ‘포괄’이라는 이름 안에 사회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수십 가지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성을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이미 법안이 통과된 영국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성은 Male(남성), Female(여성)이 아닌 수십 가지이며, 직접 성을 고르도록 가르치고 있다.(미국의 경우, 31가지 성별을 선택하도록 함)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한 번 세워지면 폐지가 어려운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시, 예를 들어 생물학적으로 남자이지만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할 때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 차별이 된다. 이제까지 발의된 대부분의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가 포함된다.

행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금지되지만, 행위에 대한 정당한 차별은 허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흡연자의 인권은 보장되지만, 담배 자체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장하지만, 동성애 자체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

####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시, 문제점

**첫째, 역차별 :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행위는 ‘차별’이기 때문에 금지한다.**

1997년, 미국 코네티컷주의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고 법원은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2006년, 캐나다 시의원은 동성애가 비정상이며 비자연적이라는 발언으로 1,000\$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08년, 개신교의 한 젊은 복음주의 목사는 대중매체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으로 그를 고소한 동성애 운동가에게 상처와 고통의 댓가로 7,000\$를 지불할 것을 명령받았다. 영국에서는 목사가 길에서 설교하던 중, 동성애자의 질문을 받고 동성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죄악이라고 대답하여 구금되었다.

### 둘째, 동성애에 대한 비윤리적 견해를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상이라고 권장하는 교육을 받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 셋째, 기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

실제로 스웨덴의 개신교 목사는 교회 주일예배에서 반(反)동성애에 대한 설교 직후, 고소되어 1심에서 징역 1개월 실형이 선고되었다. 캐나다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증오범죄로 7,500\$의 손해배상과 수십만 달러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또한, 영국 고용재판소에서는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영국 성공회 교회에 7,000\$를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 직장에서 전도한 기독교인에 대한 징계가 합법화 되었다.

## 3. 결론

###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사기꾼 법’이다.

지난 2022년 8월, ‘동성애 및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의뢰한,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pm 1.79\%$  p)를 실행했을 때, 차별금지법을 잘 아는 사람은 반대하고 모르는 사람은 찬성했다.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여성 화장실과 여성 탈의실에 들어올 수 있고, 여성부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며,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상으로 가르친다는 사실을 교육했을 때,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동일한 인원에게 물었더니, 이전의 동일한 법률을 잘 모른다면 사람 60%가 반대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와 이해가 응답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은 ‘차별 금지’라는 단어 자체에서 오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 ‘법’이니 ‘좋은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수의 동성애자들을 위해 다수의 일반인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악법’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극동방송, “차별금지법 바르게 이해하기”』

- 법무법인 아이앤애스 대표, 조영길 변호사

###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게 옳은가?

유감스럽게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공통점’은 국가의 교회와 교단이 찬성과 반대로 대립할 경우, 예외없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진보 기독교인들은 찬성했고, 보수 기독교인들은 반대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현 정부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관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신앙의 문제, 복음의 문제, 사명의 문제를 공격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해악적인 법이라는 일치된 입장을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정치적 견해를 떠나, 복음 안에서 정치적 소신과 지역을 떠나서 ‘하나 될 사명’을 가져야 한다.

### 2.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기독교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동성애에 관한 발언 및 일반인의 양심에 위배되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정확한 사례를 제시하여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받는 동성애 옹호교육에 대하여 다음세대들이 성적지향에 대한 혼란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부여되는 고유한 성이 아닌, 수십가지 종류의 선택적 ‘성’과 성적 지향이라는 성혼란을 야기하는 사례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

(예, 유치원 내의 수십 가지 성을 선택 / 쿼어축제 반대 아동에 대한 감금체벌 / 낙태 권장 교육 및 동성애 장려교육을 반대할 시, 부모에게서 양육권 박탈)

### 3.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 설교 중, 동성애 지적에 대한 내용은 불법인가?

그렇다. 동성애를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언급과 동시에 ‘정상’이라는 발언 자체가 반사적으로 차별로 여겨진다.

[차별금지법안 3조 1항 1호 나]에 의하면 교회는 재화, 용역 시설의 공급이용에 해당된다. 교회라는 시설에서 예배자라는 이용자가 동성애를 비난하면 동성애자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했다고 해석된다.

[차별금지법안 3조 1항 4호]에 의거하면, 각 목의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적대, 모

육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이유도 차별에 해당한다. 사람이 아닌, 인간의 죄(동성애)를 혐오하는 표현만으로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 역시 차별로 간주한다.

[차별금지법안 3조 1항 5호]에 의거하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개인, 집단에 대하여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등을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행위도 차별로 간주된다. 교회에서 설교뿐 아니라 광고시간에 동성애를 언급할 수 없게 된다.

복음법률가회 헌법학자, 실무법학자들과 실무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후, 교회에서 반동성애 설교 및 동성애에 관한 언급은 위법과 위반 해당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한국교회의 재산을 노략하기 위한 엄청난 집단소송의 대로가 열리는 상상을 초월한 교회 핍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4.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구체적인 법적 제재는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안 제51조(손해배상)]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손해란, 재산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포함된다. 손해배상하는 소송을 ‘위자료청구소송’이라 하는데 이 손해배상에는 상한이 없다. 따라서, 동성애 지지자들과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언급한 목회자와 그 목회자가 소속된 교회를 상대로 집단적인 손해배상 및 소송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동성애 반대 설교로 인해 “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설교자가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자의 승소는 100%로 예상된다.

동성애 반대 설교를 반복하게 되면, 악의에 해당되고 징벌적 배상이 손해의 2~5배가 된다. (배상금 하한 500만원, 중복으로 부가 가능) 동성애 반대 설교를 반복한 목회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얻기 위해 사람을 모아 집단 소송하게 될 경우, 100명이 제기할 경우 5억, 1000명이 제기할 경우 50억, 10,000명이 제기할 경우 500억을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동성애 옹호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거액의 재산을 뺏기게 되면 한국교회는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재산을 노략하기 위한 집단소송의 대로가 열리는 셈이다.

##### ↳ 목회자만 해당되는가?

아니다. 일반인들도 동성애 해악을 경고하는 강의 및 언급을 하게 될 경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안 통과시, 양심과 이성인 일반인들도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게 되며 시정 명령을 받은 이후 불이행 시, 3천만원 한도의 ‘이행 강제금’도 제한없이 부과된다.

## < II.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통과 사례 >

### 『“캐나다가 했던 일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에 전하는 메시지』

- Canada Christian Colleage<sup>1)</sup>, Charles H. McVety 총장

#### ▶ ‘한국의 자녀들’은 이 세대의 미래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수용하지만, 동성애 법안은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성별과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게 하는 악랄한 시도라며, 찰스 맥티비 총장은 악법의 폐해를 알게 되었지만, 이미 물은 엇질러진 상태라는 아쉬움을 숨기지 않는다. 이미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잃은 상태를 체감하고 있고, 캐나다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캐나다에서는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용어는 ‘부모 1’과 ‘부모 2’로 대체되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에 대한 실제적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자신을 LGBTQ<sup>2)</sup>로 규정하는 청소년들이 불과 몇 년 전보다 10배는 증가했고, 이는 그들에게 심각한 우울증을 초래하고, 캐나다에서 30세 이하의 주요 사망 원인은 자살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맥티비 총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호소한다. “한국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미래를 해치는 이 악법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 『CA 주의회,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 정체성 교육 금지』

- MBC 뉴스데스크 보도 中.

#### ▶ ‘아동학대 처벌’, 아들을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 학부모들이 더 이상 자녀에게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금지된다. 이는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학부모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률안으로 통과되면 성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생물학적 시기를 겪는 아이에게 “넌, 남자야. 넌, 여자야.”라는 발언은 아동학대 범죄 대상이 된다.

1) 1967년, 토론토에 설립된 이후 신학, 상담학, 교회음악을 전공할 수 있도록 학과목 개설,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운영. 국제기독교학원 연합회와 캐나다 기독교학원연합회에 소속, 주립대학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음.

2) 『LGBTQ』,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or Questioning 의 앞 철자의 약자.

## 『美, 초교 ‘화장실 논란’, “모두의 화장실?”』

- MBC 뉴스데스크 보도 中.

### ▶미국, ‘화장실 논란’

버지니아 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내 모든 화장실을 성별 구별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른 바, ‘성중립 화장실’로 만들어 모두의 화장실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버지니아 주의 교육위원회는 성 소수자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성중립 화장실’ 설립을 승인하였음. 현재 미국 전역에선 ‘성중립 화장실’ 설립이 증설되고 있는 추세. 이에 따른 범죄율도 늘고 있음. 또한,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남자가 자신의 성별이 ‘여성’이라고 밝히며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성추행하는 등, 관련 범죄가 늘고 있어, ‘성중립 화장실’ 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성별로 인한 공공시설 이용에 대하여 법적 제재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례가 있음.

##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의 모습』

- IF패밀리, 차별금지법 사례 中.

###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은 어떤 모습인가?

- 캐나다, David Lynn 목사, 동성애자들에게 폭행.
- 영국, 미국출신 Tony Miano 목사, 동성애자 가족에게 신고당해 체포.
- 스웨덴, Ake Green 목사,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해 2심에서 징역 1개월 선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자가 체포되고, 구금되었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됨. 또한, 동성애자 및 동성애 지지자를 <교회법>으로 처리하는 일은 처벌대상이 되었음.

### [적대적 모욕적 환경 조성 제3조 제1항 제4호] 명예훼손죄 확대적용이 가능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제정 된다면, 확대 적용은 일사천리인 셈. 법 개정은 너무나 손쉬운 일이기 때문에, 성 차별에 대한 법의 제재는 절대 책임질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될 것.

따라서, 교회와 교단,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위험을 안길 수 있는 이 법안의 통과, 제정을 반대해야 한다.



## 『영국 차별금지법의 실상, 한국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 영국 Christian Concern, Andrea Williams 대표 및 변호사

### ▶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사람을 다양한 소수집단의 특성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사실상 가정을 파괴하는 법안이다.

### ▶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영역에서 적용된다.

고용 및 주거시설 영역에서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이 시작되었으나, 법안이 통과되면 재화, 용역의 공급 영역까지 확대될 것이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집어 삼키고 신앙에 따른 교회 운영에 간섭할 것.

“따라서, 강하고 분명하며, 공적 영역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사랑’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형성되려 하는 초창기에는 강력하게 제지해야 합니다.” [Andrea Williams, 한국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중.]

## 『지금 멈춘다면, 건잡을 수 없을 미래』

-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용준 변호사

### ▶ 개별적 차별금지법 <->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 및 특정 영역에서 성별, 장애 등 특정 차별 사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이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미처 담지 못한 영역의 차별까지 포함시키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한 법안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사실상 젠더 이데올로기<sup>3)</sup>를 실행하기 위한 사적 목적이 내재된 법안이다.

### ▶ “아이들을 지키자!”, 전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라!

성별 정의를 사회적 성별<sup>4)</sup>로 정했기 때문에, 모든 공권력이 성경을 탄압할 수 밖에 없으며

3)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생물학적인 성(sex)이 아닌 사회적인 성(gender)의 개념을 통해 성 정체성을 해체하고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옹호함으로써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사회규범과 성규범을 와해시키는 것.

이로인해, 우리의 다음세대에게 제대로 된 ‘성’에 따른 정체성 교육 및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하기가 절대적으로 어려워 짐. 페루에서는 150만명의 부모가 일어나, “Don’t Mess with My Kids”(내 아이를 건들지 마)라는 공감대와 구호 아래 젠더 이데올로기 주입사상을 거부하는 집단 운동으로, 인권 교육을 퇴출시킨 바 있다. 성경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신념을 가슴에 품고 일반 시민들과 공공기관이 귀 기울일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성오염 물결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

4) 입법, 사법, 집행부에서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성적 지향을 통해 선택한 성별을 법률 안에서 관리하도록 한 것임.

## < III. 목회자가 바라본 포괄적 차별금지법 >

### 1. 각 목회자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말씀선포 및 언급 발췌

#### -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행9:22-31) / 6.25 대성회 70주년 구국기도대성회 중.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혼도 허용이 되고, 입양도 허용될 것,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는 이혼, 재혼도 마음대로 하게 될 것인데, 이들의 권리만 중요하고 남자를 엄마라고 부르고, 여자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이 땅의 다음세대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인간의 죄성으로 혈연으로 맺어준 관계에 이 아이들은 육체적, 영적 고아가 될 것.

이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동성혼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이 나라의 인구가 자멸하는 일이다. 본인과 교회(우리들교회)는 동성애자를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인권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인권의 법, 도덕, 양심, 윤리보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상위 법이기 때문에 이건(차별금지법)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는 문제이다.

#### -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고전11:2-16) / '위의 권위를 존중하라', 설교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기도 제목을 알아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원회에서 곧, '평등법'이라 바꿀 것이라 한다. 굳이, 우리나라 법 조항에 많은 '차별'에 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을 법으로 처벌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세상은 인권을 내세우고 평등을 내세운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평등, 장애인의 인권, 모든 평등과 인권은 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다. 동성애 문제는 평등,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문제이다. 하나님은 동성애는 반드시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동성애가 죄가 아니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때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도대체 생명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이는 나라가 망하고, 인류가 멸망하게 될 심각한 문제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게 법이 되는 세상이 되버렸다. 믿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랑과 공화로 품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동성애 합법화는 다르다. 어떤 죄도,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합법화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없다. 어떤 죄도, 축제(귀어)까지 벌여 가면서 부추기는 일은 없다.

#### -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딤후4:7-8) / '경건에 힘 쓰십시오!', 설교 중.

동성애 어디까지 왔나? 하나님이 신체적으로 남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 정체성은 여자다, 하며 내 성별을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이 선을 넘은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엄청난 종교탄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들을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설교 시간에 동성애가 죄라는 언급조차 해서는 안된다. 법 위반이 되는 상황이 된다. 교회에서 그런 것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된다. 죄에 대한 설교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아니면 언제 나서서 ‘소리를 외쳐야’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세대에게 올바른 성 정체성, 성 윤리관을 교육해야 한다. 창조 신앙을 근거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구속 신앙을 근거로 끊임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동성애는 분명한 죄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복음을 전한 일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성윤리연구소(분당우리교회 내 위원회)에서는 이런 성 윤리관을 통하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고침받은 나병환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서 내 생각이 아닌 늘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릴 통해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도 우리는 다음세대에게 교육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해야한다. 우리 아이들이 이 혼란 많은 세상 속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한다. 천명한다! 분당우리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선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딤후2:1-2) / ‘너는 부르짖으라(29) -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 설교 중.

동성애를 한번 접하면, 악한 쾌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데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줘야 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죄에 대한 설교조차 못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아닌 것은 아니며, 죄는 죄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입을 막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갖가지의 이름과 법률로 제정되려고 한다. 그런 시국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죄에 대하여 눈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죄와 의는 구분해야 된다. 거짓을 구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 만큼 복음 만큼 차별 없는 것이 없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을 때, 신분이 종이라고 세례 안주었나? 직분을 안주었는가? 복음을 안전했나?

-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창2:18-25) / ‘가족의 설계도’, 설교 및 연합예배 홍보영상 중.

UN에서 권고한다는 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들이 있다. 국회 일각에서 법조문을 읽어보면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성의 핵심이다. 사회 약자, 소수들을 보호하는 여러 법률이 있고 그것을 강화하면 된 것이다. 그런데, 왜 포괄적으로, 평등이란 이름으로 묶어서 하는가? 사회적 성을 법제화 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상시국이다. 지난 7월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은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한 것으로서 장차 동성혼 합법화의 문을 여는 결정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원과 국회와 정부에 하나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눅1:18-21) / ‘어떻게 세속적 문화를 변형할까?’,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연합기도회 설교 중.

이 차별 금지법은 역과잉 차별법이요, 동성애 확대법이며, 강단 제한법이다. 왜 이렇게 갑자기 강력하게 밀고 들어왔을까?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에서는 고등학교부터 동성애를 접하기 시작하여 숫자는 적지만 강력한 집단을 이뤄가지고 전투력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더 강력한 영적 전투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롬1:26-27) /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보는가?’, 고민있수다 중.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순리) 안에서가 아닌 모든 관계를 지칭하는 것을 ‘역리’라고 한다. 그 중에 남자와 남자, 동성애가 언급이 된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벗어나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성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교회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사람들을 반대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랑은 교회가 가져야 할 보편적인 가치인데 성경에 원리를 깨는 것을 수용하는 것은 안된다. 여기에 따른 분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으로 접근하는 교회,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로 확실히 서 있을 수 있게 된다. ‘리 스트로벨’의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가 선포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저술한다. 거룩한 죄를 죄라고 선포하여 죄에 중독된 사람들에게는 죄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선포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동성애에서 벗어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선포하는 것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도 복음에서 떠나게 한다면 올바른 복음이라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라는 두 가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 /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고 자녀들이 겪은 일’

미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졸업한 저희 자녀들은 차별금지법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텍사스의 초등학교에서 조차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차별금지법, 소수약자보호법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슬람권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말할 수 가 있었다. 크리스천 아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학교를 갈 수 없고, 이슬람의 코란은 가져갈 수 있었다. 약자보호법 때문에 그렇다. 식사할 때에도 학교에서 하나님께 기도는 못하는데, 이슬람을 종교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종교 장소와 기도장소를 만들어 주는 현실 속에서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면서 키웠던 부모로서도 일어나는 많은 역차별을 통해서 심각한 이부분을 직접 경험한 터, 우리가 역차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힘있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엠마오 선교회, 차성진 목사 / ‘LGBTQ에 대한 각 교단의 생각’, 성지순례 중.

성경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따르면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따라서, 동성애가 아닌 이성애라고 한다면 이성애는 항상 올바른 형태로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 결국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모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이다.

- 벨레뷰 침례교회, Adrian Rogers 목사(창1:27) / ‘차별금지법과 성평등에 대해’

사탄은 사람들을 속였다. 사탄은 오늘 날 ‘성평등’의 탈을 쓰고 성별 간의 차이를 없애려고 한다. 다른 남녀를 똑같이 만들려고 한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갈3:28)이다. 그러나 남녀의 평등함은 기능에 있어 똑같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리더를 두셨다. 하나님은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두셨다. 이는 보스의 의미가 아니다. 남편이 보스처럼 군림하는 것과 머리로서 역할하는 것은 다르다. 남편이 집에서 머리로서 역할할 때 가정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 그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창조질서에 따라 남자와 여자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 Just Jesus, 브라이언 박 목사 /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Q&A 답변 중.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세상이 목숨걸고 지옥에 간다면, 우리는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여서 똑같이 따라가야 하는가? 아니요!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는 말도 안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싸워야 한다.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 합법화 시키는 것은 ‘죄’다. 지금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가지 말고, 정죄하지 말며 우리가 앞장서서 세상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을 위해 같이 기도해야 한다!

- 삼송제일교회, 정대운 목사(단4:17,25,32) / ‘세상의 왕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설교 중.

다음세대에게 토익시험이 주일인데, 시험을 보러가야 하는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와야 하는가?를 놓고 세상은 선택하라 하는 것이다. 다음세대로 하여금 당연히 시험보러 가는게 맞다고 여기게끔 불합리한 구조가 아직 우리 사회에 있다. 내가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고,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이다. 내가 동성애자가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순간, 이 싫다는 말을 못할뿐더러 하다 못해 표현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자유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자유지만,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자유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와 악은 미워하고 싫어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악한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미워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종교의 자유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된 것이다. 다른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 것이다. 나쁜 것을 이야기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십니까?’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

하여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른 종교의 아니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모두 막아버리는 것이다. 다른 종교를 비난하고, 비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억압된 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것이 된다.

- Saving Grace Seoul, Paul Yoon 목사(벧전5:8) / ‘베드로전서 : session 33’, 설교 중.

하나님의 편에 서겠는가? 인본주의 편에 서겠는가? 여러분이 아는 차별금지법은 겉으로 보기엔 좋아보인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온다. 겉으로 보기엔 좋다. “아무도 당신을 차별할 수 없다!” 이게 어디까지 가는 줄 아는가? 남자가 갑자기 여자라고 한다. ‘내가 여자라고 하는데 왜 차별합니까’ 그 사람이 남자라고 하면 바로 고소당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여자 아이가 “저 남자 되고 싶어요”하면, 부모는 그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성전환 수술을 시켜야 한다. 안 그러면 미국 정부가 양육권을 박탈한다. 이 법이 한국에서 통과되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성전환이 합법화되고, 남녀가 같은 화장실을 쓰고, 남자들이 여성 교도소에 들어가서 또 다른 범죄의 연속이 되는 것이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다! 이 시대, 소돔과 고모라가 곧 임박한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겠는가? 지금 좌파, 우파 따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편에 서자는 것이다!

##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에 따른 지식인 언급

- 캐나다 임상 심리학자, Jordan B. Peterson / ‘차별 금지법과 퀴어 축제에 대해’

‘Pride Month’ 라는게 있는데 대체 뭘 기념하는 건가? Pride(교만)은 ‘심각한 죄’이다. 차별금지를 옹호하는 이들은 지금껏 억압당한 사람들이 성 정체성을 찾으려 거기서 안도감을 찾고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Pride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서 안정을 찾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이 쓰는 용어인 ‘Pride’는 어떤 말로 미화하려해도 쾌락주의적인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교만(Pride)이다.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의 성적 욕구에서 찾겠단 말인가? 당신의 성욕이 당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인가? 성욕은 “쾌락주의”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장 원초적이며 쾌락주의적인 것으로 축소시키는 자들이 차별금지에 대해 옹호하며, 퀴어 축제를 선동하는 것이다.

- 변호사, 김용준 / ‘차별금지법이 왜 비성경적인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중.

우리나라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본업을 내려놓고 집필에 몰두했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단체에서는 증거와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객관적 근거만 5000개 이상을 준비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 중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넘어가지 않은 최후의 보루이다.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후에 젠더 이데올로기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탄압하는 것에 대하여 논점을 이야기 하고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토대가 우리 나라이다. 아직 이 근거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다른 나라를 대신해 이야기를 전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탄압하는 것에 대하여 대신 싸워줄 수 있지 않을까.

## < IV. 결론 >

###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입법화된 나라들을 살펴보면, 참담한 현실 속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다음세대에 대한 미래를 꿈꿀 수 없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며, 나라와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될 기회를 상실한 오늘날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1. 다음세대 및 자녀세대에 학교 및 교육기관 내, 동성애 편향 의무교육 실시.
2. 부모로서 자녀들의 성전환 반대시, 양육권 박탈.
3. 화장실, 탈의실 등 공공시설에서의 성 구별 없이 공용사용 강요.
4. 직장 및 고용기관에서 동성애 반대시, 직임 해지 및 해고.
5. 불공정하고 불안한 사회.  
(성적지향에 따른 생물학적 남성 및 여성 파트에 개입 / 파리올림픽 여성부 복싱)
6. 에이즈환자에 대한 전액 국고 지원.  
(대한민국은 현재, 에이즈 감염 환자 1인당 100만원씩 지원)
7. 출산을 저하, 국가소멸 재촉.  
(동성애 합법화에 관한 미래 사회 불확실 / 가정소멸위기)
8. 헌법에 보장된 자유 억압.  
(표현, 종교, 양심, 사상의 자유 박탈)

건강한 가정이 상실되고, 결국 ‘가정’이라는 구성체가 무너지면 이는 곧, 나라와 민족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수많은 나라들의 직접적인 사례를 통하여 이제는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전세계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 골든타임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 주어진 것이다.

이제는 그동안의 세상의 유혹과 쾌락, 성경적 가치관을 퇴색시키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버렸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이다. 우리는 유래없는 어떠한 희망과 소망도 보이지 않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빛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품어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 이제라도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창조질서를 무시하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청지기의 역할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과 가정을 깨뜨리려 했던 죄악을 회개하여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